

2016. 5.17.(화) ~
5.20.(금) / 4일간

제28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목 차

1.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
2.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
3.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
4.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
5.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
6.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 7
7.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 등록
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
8.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
9.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
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
10.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
11.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
12.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3

심사결과

의안명	의결결과
○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수정 가결
○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 가결
○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규모·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 가결
○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	수정 가결

주요 내용

1.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발의일자 : 2016. 5. 10.
- 발 의 자 : 김희식, 김옥 의원
- 제안이유
 - 장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한 규정을 무등록제(교황식)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의장단 선거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의 규칙 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 서면 등록(안 제8조 5항)
- 법적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 - 규칙안 제8조5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“1일 전” 까지 서면 등록을 “2일 전” 으로 수정하여 의결함.
 -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-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- -- 후 -----	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

<p>-----.</p> <p>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,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은 서로 중복하여 할 수 없다.</p>	<p>⑤-----</p> <p>-----2일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---	--

2.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5. 10.
- 발 의 자 : 김희식, 김옥 의원
- 제안이유
 - 장성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무등록제(교황식)에서 등록제로 개선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장단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까지 서면 등록(안 제6조 5항)
 - 위원회 별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고, 의장·부의장 선거와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(안 제6조 5항)
- 법적근거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○ 조례안 제6조(상임위원장) ⑤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“1일” 전까지 서면등록을 “2일” 전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함.

○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	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----- ----- <u>같은 날</u> <u>에 본회의</u> -----.	② (개정안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	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
⑤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<u>1일</u>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. 이 경우에 위원회 별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고, 의장·부의장 선거와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	⑤----- ----- 2일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3.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
○ 인용중인 상위법 일부 조항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인 “등록 및 변경등록” 외에 위임범위를 벗어난

“재교부” 수수료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함.

▪ 주요내용

- 제7조제1항제3호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- 제7조제1항제5호 「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- 별표 1 <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> 중 제7호 마항 공연장등록증재교부 신청 수수료 “3,000원” 항목을 삭제

▪ 법적근거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공연법」 제39조(수수료) 제2항

▪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4.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▪ 발의일자 : 2016. 5. 10.

▪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▪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, 운영원칙(안 제1조~제4조)
-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(안 제5조)
- 후생복지사업 시행, 후생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(안 제6조~ 제7조)
 - 직장내 체육, 취미, 그 밖에 여가활동 지원
 - 공무원의 문화체험·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

- 상조용품 지원, 공무원의 생일 축하금품 제공
- 후생복지심의 위원회 및 사업·시설 운영의 위탁(안 제8조~ 제9조)
-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(안 제10조 ~제12조)
- **법적근거**
 -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능력증진을 위한 사항)
 -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6530호)
 - 「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」(표준안)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5.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**발의일자** : 2016. 4. 8.
-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
- **제안이유**
 -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가정생활을 배려하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휴가(2건)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.
- **주요내용**
 - 특별휴가 2건 신설 조례 반영(안 제23조)
 - 자녀 군 입영에 따른 1일 특별휴가 부여
 - 불임치료 시술에 따른 1일 특별휴가 부여 : 본인 및 배우자
- **법적근거**
 -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(위임규정)
-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6.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상위법(도로법시행령 제71조제2항)에서 보장하는 분할징수 조항 신설 및 상위법(도로법) 조항 변경에 따른 법조항 변경
- 주요내용
 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1조제2항 도로점용료 분할징수에 대한 조항개정(안 제4조)
 -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·징수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.(단서 신설)
 - 상위법(도로법)조항 변경에 따른 법조항 변경(안 제1조~제9조)
- 법적근거
 - 「도로법」 제66조 및 동법 제117조

7. 장성군 전통산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과 현재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규제 및 중복조항 등은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상위법인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부합하게 정비
 - 상위법에 맞게 법조항 정비 : 목적, 정의, 협의회 기능 및 임무 등

-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, 실태조사 조항 신설 : 법 제7조 및 제7조의4
- (현행)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(개정) 등록 및 변경등록

○ 불합리한 규제 정비

-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시 제출서류 중복 요구 부분삭제
-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에 정비 대상임.

▪ 법적근거

○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8. 장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5. 10.
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▪ 제안이유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 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를 강화하여 장성군 고시(제 2007-6호)로 규정하였으나,

-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요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▪ 주요내용

-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규정(안 제4조 별표)

-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제한(안 제5조)

▪ 법적근거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9.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상위법령(폐기물관리법)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당조항 삭제
 -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로 분류(위임범위 일탈에 해당)
- 주요내용
 - 상위법령(폐기물관리법)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당조항 삭제
 -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로 분류(위임범위 일탈에 해당)
- 법적근거
 - 「폐기물관리법」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10.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 26970,2016. 2. 11.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
 -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권고 및 기업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촉진 및 주민 편의 증진
- 주요내용
 -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범위 확대(안 제17조)

- 공작물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 확대
 - 도시지역 : 수평투영면적 25㎡이하 → 50㎡이하
 - 비도시지역 : 수평투영면적 75㎡이하 → 150㎡이하
-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및 표고기준 완화(안 제20조)
 - 경사도 : 15도 미만 → 20도 미만
 - 표 고 : 기준 지반고 기준 50m 이내 → 인접 도로 기준 높이 차가 50m 이내
-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 삭제(안 제26조)
 -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임. 행정자치부 권고사항
-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가능 시설 확대(안 제50조)
 -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조건 충족 시 공장 건축 가능
- 용도지역지구에서 건폐율 완화(안제55조, 안제56조, 안제57조의2, 안제59조)
 -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: 20% 이하 → 30% 이하
 -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: 20% 이하 → 30% 이하
 -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미 설립 운영 중인 학교 : 20% 이하 → 30% 이하
 - 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축하는 산지유통시설 : 20% 이하 → 60% 이하
- 기존 건축물의 특례 확대(안 제63조의2)
 -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 및 업종변경 가능
- 그 밖에 각종 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한 조문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
- 법적근거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11.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- 제안이유
 -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6411호, 시행 2015.07.20.)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 - 조직개편 등 주요 업무통합·이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 - 귀농인 관련 사업 및 경비지원을 위한 관련조문 정비 및 신설
- 주요내용
 -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(안 제1조)
 - 당 초 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4조 및 제39조
 - 변 경 :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 - 귀농인의 정의(안 제2조 2호)
 - 정의내용(변경)
 - 당 초 : 장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
 - 변 경 :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세대주가 다른 산업에 종사
 - 정의내용(변경)
 - 당 초 :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
 - 변 경 :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
 - 위원회 설치 위원직 변경(안 제3조 3호)
 - 당 초 :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
 - 변 경 :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
 - 귀농정착금 지원(안 제8조)
 - 당 초 :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변 경 :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 초기 이주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 - 사업지원(안 제10조 1호)
 - 지원사업 세부명칭(추가)
 - 당 초 :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

- 변 경 : 영농정착지원, 우수창업농 지원 등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
- 지원사업 명칭(삭제 및 신설)
- 당 초 :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
- 변 경 :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,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 신규영농 창업준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
- 지원사업 항목(삭제)
- 당 초 :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,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 조정을 위한 지원
- 변 경 : 삭제

○ 자녀학자금 지원 항목 삭제(안 제12조)

- 당 초 :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.
- 변 경 : 삭제

■ 법적근거

- 법적근거 :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26411호, 시행 2015.07.20.) 제정
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12.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

- 발의일자 : 2016. 4. 8.

- 발 의 자 : 장성군수

■ 제안이유

-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, 기능 등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
- 이용신청, 사용허가, 사용제한, 사용료 징수 등의 기준 마련
- 제품의 품질, 안전, 소비자 보호 등 책임에 관한 근거 필요

■ 주요내용

-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목적, 명칭과 위치, 기능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제4조)

○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(안 제5조~제8조)

- 구 성 : 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/ 위원 9명 내외 / 임기 2년
- 기 능 : 가공센터의 운영, 제품개발 지원, 사용료 결정 및 자문 등

○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6조)

- 사용료 : 구입가격, 에너지 소비량, 농업인 등의 부담등을 감안하여 「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」에서 심의 결정

○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제19조)

○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무관리 및 기타 사항 (안 제20조~제21조)

▪ 법적근거

- 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▪ 의결결과 : 수정가결(제2차 본회의 / 2016. 5. 20.)

- 조례안 제5조 제2항 “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” 를 “다만, 위원회 구성 중 장성군의회 의원1인을 포함한다.” 로 수정 가결함.

○ 조례안 수정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다만, 위원회 구성원 중 장성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.